■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비교

구 분	학 원(독서실)	교 습 소	개인과외교습자
학습자수	▸동시 10인 이상	▸동시 9인까지(피아노는 5인)	▸동시 9인까지 (인원제한 규정은 없으나, 교습소 준용)
건축물용도 (교습장소)	▸2종근린생활시설(학원) ▸교육연구시설 ▸독서실(2종근린생활시설)	▸2종근린생활시설(학원, 교습소) ▸교육연구시설	▸학습자의 주거지(주택) ▸교습자의 주거지(주택)
시설규모 조례[별표1]	▸조례[별표1]에 따른 시설 규모 ※ 학원설립·운영자가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 운영할 경우, 교습과정 각각의 면적이 있어야 함.	▸교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▸1인이 2개 교습소 운영 못함 (1과목, 1인 강사)	▸해당없음
명칭사용	▸고유명칭+학원(독서실) ▸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불가	▸고유명칭 + 교습과목 + 교습소 ▸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불가	▸해당없음
설립·운영자 결격사유	▸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9조 ▸결격사유조회 : 실시 ▸결격설립자조회 :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	▸해당없음	▸해당없음
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	▸설립운영자: 교육지원청 조회 ▸강사, 직원: 설립·운영자	▸교습소신고자 : 교육지원청 조회 ▸보조요원(교습불가):설립·운영자 ▸임시교습자: 설립·운영자	▸개인과외신고자 : 교육지원청 조회
직통계단 (시군구청)	▸3층 이상 전용면적 200㎡이상 직통계단 2개소 필요 [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] 2003.2.24.이전 건물은 해당없음	▸3층 이상 전용면적 200㎡이상 직통계단 2개소 필요 [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] 2003.2.24.이전 건물은 해당없음	▸해당없음
소방	▸적용	▸해당없음 (자체점검: 소화기, 화재감지기, 유도등 등)	▸해당없음
강사 채용 가능 여부	▸채용가능 - 학원장 강사가능(자격)	▸강사 채용 불가 (다만, 출산 또는 질병 등 사유가 있을 때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음) ▸보조요원(교습불가) 채용 가능	▸강사 채용 불가 - 개인과외교습자만 가능
교습비등 표시, 게시	▸적용	▸적용	▸부분 적용 (게시하거나 학부모 요청 시 제시)

구 분	학 원(독서실)	교 습 소	개인과외교습자
일시수용 능력인원	▸ 강의실 1㎡당 1인 이하 ▸ 열람실 1㎡당 0.8인 이하 ※ 실습실은 조례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 참고	▸ 1㎡당 0.3인 이하(3.3㎡ 1인) (9인 이하 / 피아노교습의 경우 5인 이하)	▸ 9인 이하 (인원 제한 규정은 없으나, 교습소 준용)
교습비등 조정명령	▸ 적용 (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한함)	▸ 적용	▸ 적용
교습비등 영수증발급	▸ 적용	▸ 적용	▸ 적용
교습시간 제한	▸ 적용(평생직업교육학원) - 초 : 21시, 중 : 22시, 고 : 23시	▸ 적용 - 초 : 21시, 중 : 22시, 고 : 23시	▸ 적용 - 초 : 21시, 중 : 22시, 고 : 23시
교습과목 및 대상	▸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2	▸ 1인 1개소 1과목(초, 중, 고, 시험준비생 지식·기술·예능교습) ▸ 유아·성인 대상으로 가능	▸ 여러 과목(초,중,고,시험준비생, 지식·기술·예능교습) ▸ 유아·성인은 신고대상 가능
교육 환경정화등	▸ 적용(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한함)	▸ 적용	▸ 해당없음
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	▸ 해당 전용면적 190㎡ 이하 제외 ▸ 100인 이상 300인 미만 - 수용인원 산정방법: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를 1.9㎡(학원) 또는 3㎡(독서실)로 나누어 얻은 수 [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]	▸ 해당없음	▸ 해당없음
연수 및 교육	▸ 학원 설립·운영자연수 ▸ 성희롱예방교육(연 1회 이상) ▸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(매년 1시간 이상) ▸ 긴급복지신고 의무자교육 (매년 1시간 이상) 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(2년마다)	▸ 학원 설립·운영자연수 ▸ 성희롱예방교육(연 1회 이상) ▸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(매년 1시간 이상) ▸ 긴급복지신고 의무자교육 (매년 1시간 이상)	▸ 해당없음